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 공포(2024년 12월 24일 예정) 1년 후 시행,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 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중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정한 것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 *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환경책임보험 심의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에서 지명하는 공무원과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요.
 3. 환경책임보험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담당자	사무관	남경임 (044-201-6754)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책임자	과 장	서민아 (044-201-6810)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6811)



□ 개정 배경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초등학교 체육관 및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필요
- 환경보건법 개정*(24.3.19.)에 따라 하위법령에 환경책임보험 검토·심의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업무를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 주요 개정 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에 추가
 - 신축시설은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32.9.1일부터, 지역 아동센터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9.9.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규정 마련(안 제7조의3)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검토·심의를 위해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신설
 - 위원장은 환경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위촉, 검토·심의한 결과를 환경보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

□ 기대 효과

-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 제도 운영

□ 어린이활동공간 개념

- (정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8호)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도료, 마감재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 질량분율로 90mg/kg 이하*
	실내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m ³ ·h 이하, 톨루엔 0.08mg/m ³ ·h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2.5mg/m ³ ·h(페인트) 또는 40mg/m ³ ·h(벽지) 이하
목재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및 ② 크롬구라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 (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모래 등 토양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 크롬: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합 :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mg/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 총함량이 0.1% 이하*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 80μg/m ³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 400μg/m ³ 이하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사항('22.4.7. 시행), 시행일 이전 설치 시설 '26.1.1.부터 적용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의무

- (안전기준 준수)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함(법 제23조제4항)
- (확인검사 시행)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신축한때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23조제6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때

- (확인검사 명령 이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23조제10항)
- (부적합 시설 개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됨(법 제23조제9항)
- (개선명령 이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제23조제5항)
- (개선결과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벌칙)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과태료)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도입 배경

- 구미 불산사고('12.9), 여수 GS칼텍스 유류유출사고('14.1) 등 대형 환경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의 필요성 대두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14.12) 시,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16.7 시행)

□ 보상체계

- (보장 범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
- (배상책임)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시설 종류에 따라 500~2,000억원까지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국가 부담
- (보장 한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30~300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장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 구조 >

금액 구분	국 가 (구제계정)	국 가 (구제계정)	국 가 (구제계정)
	사업자	사업자	국 가 (구제계정)
배상책임한도 가군 기준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			
보험 보장한도 가군 기준 300억 나군 100억/80억 다군 50억/30억	보험사 (환경책임보험)		
	보험 가입 사업자	보험 미가입 사업자	원인 제공자 미상 /무자력 등

□ 의무가입 대상 및 현황

- (가입 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약 14만개 사업장)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약 1.5만개 사업장)
 - *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대기·수질 1종 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 (가입 현황) 15,301개 대상 사업장 중 98.7%인 15,102개소 가입('24.10월)